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제출자

- 성 명 : 이호민
- 연락처 : 010-2249-9507

2. 의견내용

공고(안)	수정(안)	수정사유																								
(4) 용역수행성과(p.10, 설계분야)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d>용역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이상 86점 미만</td><td>86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4) 용역수행성과(p.29, 감리분야) ○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4) 용역수행성과(p.10, 설계분야)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d>용역평가 결과</td><td>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6점 이상</td><td>86점 이상 83점 미만</td><td>83점 미만</td></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4) 용역수행성과(p.29, 감리분야) ○ 설계분야와 같이 절대평가를 시행	용역평가 결과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이상 83점 미만	83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수행성과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해소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감리분야도 설계분야와 같이 절대평가를 수행하여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95점 이상 만점 적용시 소수의 업체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단계 아래인 92점 만점으로 적용하여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함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용역평가 결과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이상 83점 미만	83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